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

보 도 참 고 자 료

배포시부터 보도 가능

• 미래창조 금융
• 따뜻한 금융
• 튼튼한 금융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투자금융연금팀			
책 임 자	박주영 팀장(2156-9790)	담 당 자	김영대 사무관(2156-9798)	
배 포 일	2016.3.2 (수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	총 2매

제 목 : 파이낸셜뉴스 (3.2일자) "증권형 크라우드펀딩, 세부 가이드라인 없어 중개업체 분통" 관련

< 보도 주요 내용 >

□ 파이낸셜뉴스는 3.2(수)자 "증권형 크라우드펀딩, 세부 가이드라인 없어 중개업체 분통" 제하의 기사에서

○ "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B대표는 고민이 많다.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차원에서 투자광고를 준비하고 있지만 세부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애로사항이 크다는 것이다"고 보도

< 보도 내용에 대한 해명 >

□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**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**(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업체) **홍보에 대한 가이드라인**을 **크라우드펀딩 업체들에게 명확히 제시**하고 있음

* **업체 T/F, 간담회, 질의·답변** 등을 통해 **해당 사항을 안내**하고 있으며, 답변을 미루는 경우는 없음

□ 현재 **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**의 홍보, 행사 등 **광고는 2가지로 분류되어,**

① 펀딩을 받는 기업에 대한 광고 등 투자 광고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**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(크라우드펀딩 업체)의 홈페이지(플랫폼)**을 통해서만 가능함

* 관련규정 : 자본시장법제117조의9(투자광고의 특례)

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 투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 중개업자(크라우드펀딩 업체) **자체에 대한 광고는 홈페이지 외에도** 온·오프라인, 행사 등 광범위하게 **가능함**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http://www.fsc.go.kr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